

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공고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- 220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합니다.

2014. 6. 16.

중 소 기 업 청 장

1. 휴면조합

조합명	소재지	대표자	설립일자	휴면명령 사유
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3 코오롱포레스텔 1302호	박상건	1962.05.21	- 법정 최저받기인 수 미달 - 법정 임원 정수 미달 - 고유목적사업 미이행 - 출자금 부족

2.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(☎042-481-4590,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)

3. 유의사항

-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.
-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.
-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,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.